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21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 박상혁 · 임오경 · 박 정

강훈식 · 최종윤 · 인재근

허 영ㆍ이정문ㆍ이동주

이소영 · 민형배 · 서영석

김철민 · 신동근 · 김윤덕

이타희 • 어기구 • 홍익표

진성준 • 이규민 • 서영교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 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거세지고 있고, 해당 의혹이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의부동산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들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및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제1항 중 "자는"을 "자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의거래를 한 자는"으로, "5천만원"을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재산상의이익의 3배 이상 5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 ③ (생 략)	방지대책) ① ~ ③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④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
	는 자로부터 업무 처리 중 알
	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
	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	제57조(벌칙) ①
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u>자</u>	
<u>는</u>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u>	자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 부동산 거래를 한 자는</u>
<u><단서 신설></u>	<u>그</u> 위반행위로
	부터 얻은 재산상의 이익의 3배
	<u>이상 5배</u>
	<u>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u>
	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의 5배에 해당하
	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u>한다.</u>
<u> <신 설></u>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
	은 병과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정한
	<u>다.</u>
② (생 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